인지세 납부 안내

부동산 분양계약은 인지세 과세 대상이며 분양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시고, 정부수입인지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계약 전에 전자수입인지 사이트, 우체국, 은행 등에서 **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신 후 분양계약 시 필히 지참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2023년 1월 1일 부터 인지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납부기간 합리화
– 기존 : 문서작성일까지 ▶ **변경 :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제출.** 〈예시 – 23년 10월 계약, 23년 11월 10일까지 제출〉

과세금액 (「인지세법」 제3조 제1항 제1호)

구분	세액	
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(분양계약서 등)	1천만원 ~ 3천만원 이하	2만원
	3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이하	4만원
	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7만원
	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15만원
	10억원 초과	35만원

전자수입인지 인터넷 구매방법 안내

[1]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(www.e-revenuestamp.or.kr) ‘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’ 선택

[2] 사이트 하단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‘구매’ 클릭

[3] 납부정보 입력 및 결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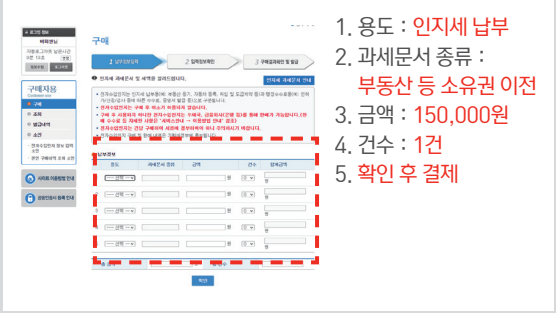

1. 용도 : 인지세 납부
2. 과세문서 종류 :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3. 금액 : 150,000원
4. 건수 : 1건
5. 확인 후 결제

[4] 출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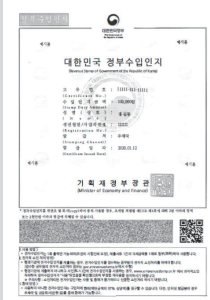

※ 출력 후 계약 시 지침
※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, 반드시 ‘테스트 출력 후’ 발행 바랍니다. (재출력 불가)

※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으로 구입하셔야 하며,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 간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인계하는 것은 납부 미이행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※ 분양권 전매계약서 또한 ‘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’에 해당하므로,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한 때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, 전매 시마다 인지세가 발생합니다.